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 및 재난 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목적·주기 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장 등 조직 구성과 주요 기능,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핵심기반에 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주요기능 등(안 제18조의3 신설)

- 1)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중앙

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도록 함

- 2)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재난 발생 및 수습 정보 제공, 장례·의료 및 세제·금융 등 직·간접 지원사항 접수·처리, 각종 상담 및 건의사항 처리 등 재난 피해자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함

나.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 대상 방법 등 조사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안 제67조의2 신설)

- 1) 재난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심리 등 생활안정 및 회복 정도, 재난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 정도, 재난 복구·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재난 발생 전·후 지역과 개인 재난대비 현황 및 인식 변화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정함
- 2) 조사의 대상을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및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하고, 면접·전화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3) 실태조사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규정(안 제73조의13제1항제2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안전신고의 접수·이송·관리·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를 정함
라. 국가핵심기반에 산업분야 신설(안 별표 2)

국가핵심기반에 산업분야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해당 산업의 기능 마

비 시 다른 분야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핵심 제조 기능·공정 또는 공급망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마. 타법 제·개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안전 분야 사전협
의 대상 추가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개정, 2026.1.2. 시행)에 따라 댐 관련 재난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일원화 되어 사회재난 유형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댐’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 1의3)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본계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며,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라 산림청 소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사전협의 대상 계획으로 추가함(안 별표 1의4)

바. 긴급구조교육의 신규교육 법정 이수기한 단축(안 제6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긴급구조교육의 법정 이수기한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지휘·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가족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및 수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2.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3. 법 제66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접수·처리
4.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법률·보험 상담 지원 및 건의 사항의 접수

• 처리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 전단”을 “법 제14조의2 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심리 등 생활안정 및 회복 정도
2. 재난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 정도
3. 재난 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4. 재난 발생 전·후 지역과 개인의 재난대비 현황 및 인식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3항 및 「재난구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지원을 받은 재난피해자 및 재난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유가족을 포함

한다)

2. 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및 지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조사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제2
항에 따른 피해신고서 내 조사대상 정보

2. 재난복구사업 추진 및 재난피해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피해 회복수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실태조사 관련 정책 · 기술 연구개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10제1항제4호가목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3조의13제1항제2호 중 “접수 · 이송 · 관리 및 점검”을 “접수 · 이송 · 관리 · 점검 및 이를 위한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주소 정보의 수집 · 이용”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실시 · 분석 · 공표
2.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
3. 재난피해 회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 및 실태조사 관련 정책 · 기술 연구개발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 별표 1의3 제2호거목1) 중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을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댐”으로 한

다.

별표 1의4 제3호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며, 같은 란 제7호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별표 1의4 제7호의 협의 시기란 중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제7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제9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

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별표 1의4 제9호의 협의 시기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1의4에 제1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별표 2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산업	해당 산업의 기능 마비 시 다른 분야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핵심제조 기능·공정 또는 공급망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의13제1항, 제73조의10제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이 영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67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제67조의2제5항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u> <u>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지휘·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u> <u>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가족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및 수습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u> <u>2.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u> <u>3. 법 제66조제3항제1호부터 제</u>

	<u>7호까지 및 제9호, 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접수·처리</u> 4. <u>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법률·보험 상담 지원 및 건의 사항의 접수·처리</u> 5. <u>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u>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u>법 제15조제4항 전단</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u>법 제14조의2제3항</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u>법 제55조제3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 ----- ----- ----- -----

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 교육

2.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 6개월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58

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심리 등 생활안정 및 회복 정도

2. 재난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 정도

3. 재난 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4. 재난 발생 전·후 지역과 국민의 재난대비 현황 및 인식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3항 및 「재난구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을 받은 재난피해자 및 재난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유가족을 포함한다)

2. 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및 지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 내 조사대상 정보

2. 재난복구사업 추진 및 재난 피해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피해 회복수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실태조사 관련 정책·기술 연구개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를 말한다.

1. ~ 3. (생략)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생략)

5. (생략)

② ~ ④ (생략)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이송·관리 및 점검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접수·이송·관리·점검 및 이를 위한

3. ~ 5. (생략) ② (생략)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 2. (생략) ② ~ ⑥ (생략)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u>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주소 정보의 수집·이용</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 <u>1.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실시·분석·공표</u> <u>2.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u> <u>3. 재난피해 회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 관련 정책·기술 연구개발</u> 4. · 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u>제1호의2</u>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1. ~ 4. (생략) ② (생략)	----- ----- ----- ----- -----<u>제3호</u>----- ----- ----- ----- -----. 1. <u>법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u>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